

충청북도단양군매포공해지역이주대상자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단양군매포공해지역이주대상자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항중 "1993년 12월 31일"을 "199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근거)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 ③(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부 칙</p> <p>① ~ ② (생 략)</p> <p>③(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1993년 12월 31일</u> 까지 시행한다</p>	<p>부 칙</p> <p>① ~ ② (생 략)</p> <p>③(시행기간) <u>1994년 12월 31일</u></p>